



대한체육회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최저학력 미도달 초·중학교 학생선수 대회 참가 제한 규정 한시적 적용 유예 안내

1. 관련근거: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-3090(2024. 11. 12.)
2. 제157회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*에 따라 「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」 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, '최저학력 미도달 초·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이 한시적으로 유예**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* (심의·의결) `24.11.8.(금), (적용시기) 공문 확인 즉시 시행
 - ** (주요 내용) 초·중 학생선수도 고등학교 학생선수와 같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후 경기대회 참가 허용을 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 실시

□ 학생선수 대회 참가 제한 규정 한시적 유예사항

- 관련법규: 「학교체육 진흥법」 제11조 제1항
- 적용시기: 공문 확인 즉시 시행
- 적용대상: 초(4~6학년), 중학교 학생선수
- 주요내용: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,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후 경기대회 참가 허용

붙임 교육부 공문 1부. 끝.

대한체육회



시도체육회장

★과장

배준익

부장

전결 11/12

김대우

협조자

시행 청소년체육부-5761 (2024.11.12.) 접수 선수육성팀-1698 (2024.11.12.)

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(방이동, 대한체육회) / <http://www.sports.or.kr>

전화 02-2144-8351 전송 / 공개